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 :대구지역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박 영 주**

[국문 요약]

최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n번방'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적극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을 매개로 발생하기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확산되기 쉬운 디지털의 특성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구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 94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약 95.1%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97.6%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92.3%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여학생의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와 미이수 집단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즉,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의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식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유무와 가해경험의 차이가 있었기에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공모전과 캠페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 성범죄, 성범죄 피해, N번방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사업으로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Daegu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E-mail: pyj78@hanmail.net

목 차

- I. 서론
- II.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 III.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
-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미 과거 ‘소라넷 사건¹⁾’과 ‘웹하드 카르텔’ 등으로 이어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20년 ‘n번방²⁾’ 사건으로 인해 집단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적극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n번방 이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강화와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다. 즉,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이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전파가 용이한 디지털의 특성으로 확대·재생산되기 쉬워 그 피해가 한 번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디지털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디지털기에 익숙한 10대가 연루되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러한 디지털기와 정보에 익숙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아

1)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 성인 사이트로 출발하였으며, 급속히 막장화되어 범죄적 성인물 사이트로 악명 높았고, 해외 기반 사이트이나 대부분 한국 이용자였음. 현재 사이트는 차단됨(나무위키, 소라넷 검색)
2)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즉, 성 착취 사건임(위키백과 ‘n번방 사건’ 검색)

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는 감소하였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3.24.).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심각성을 아동·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대구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이러한 예방교육의 이수 여부와 디지털 성범죄 범죄성 인지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와 가해실태를 조사하여, 양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는 학문적·정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부에서는 “디지털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서,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및 협박,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성매매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박수현, 2018: 26), 윤덕경 외(2018: 23)는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참여, 소비의 행위로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이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온라인 그루밍을 성폭력 범죄의 전 단계에 행해지는 넓은 의미의 성범죄 유형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김지영, 2020: 4; 김정연, 2021: 123). 성적 착취의 맥락에서 그루밍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가장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행위이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4.23.).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루밍 성범죄 역시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를 얻고 점차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장근영·임지연, 2021: 20).

온라인 그루밍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도 PC에서 채팅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가 행해지기도 하였으며, 이후 모바일 기기, 웹캠 등 개인용 영상 도구의 출현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한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디지털 문화를 악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성착취에 이르는 행위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정의한 바 있다(장근영·임지연, 2021: 21에서 재인용; 전수아·권하늬·정하나·김수영, 2021; 김지영 외, 2021).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SNS,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린 나이 또는 빈곤 등과 같은 취약함을 이용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성범죄로 나아가기에 피해자 선택 및 관계형성, 비밀유지와 고립하기, 성착취, 지속적 성착취를 위한 통제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김한균 외5인, 2020.5.31.: 7).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와 재유포, 유통 및 공유, 유포협박, 사진합성(이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³⁾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49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이 중 10대가 151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33.6%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1.7.15.).

이외에도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성범죄는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2019년의 경우 2,753명에서 2020년 2,607명으로 감소하였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9년 3,622명에서 2020년에는 3,397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3) 이 연구에서의 가해실태와 피해실태의 분석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은 제외하였음. 왜냐하면 온라인 그루밍은 성착취가 발생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양적 조사에서 이러한 그루밍의 과정과 행위태양을 모두 확인하여 조작적 정의를 통해 문항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유형에서 성적 농담이나 성적으로 표현하는 불쾌한 말 등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인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자는 157명인데, 피해자는 301명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3.24.) 그 심각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2019-2020)

[단위: 명(%)]

	가해자		피해자	
	2019	2020	2019	2020
성폭력	2,090(75.9)	1,869(71.6)	2,638(72.8)	2,299(67.7)
강간	529(19.2)	530(20.3)	525(14.5)	508(15.0)
유사강간	179(6.5)	165(6.3)	189(5.2)	177(5.2)
강제추행	1,382(50.2)	1,174(45.0)	1,924(53.1)	1,64(47.5)
성매매	310(11.3)	212(12.0)	322(8.9)	284(8.4)
성매수	69(6.1)	168(6.4)	179(4.9)	155(4.6)
성매매 강요	48(7)	38(1.5)	51(1.4)	37(1.1)
성매매알선	93(3.4)	106(4.1)	92(2.5)	92(2.7)
기타 성범죄	353(12.8)	426(16.3)	662(18.3)	814(24.0)
통신매체음란	6(0.6)	23(0.9)	61(1.7)	45(1.3)
카메라등이용촬영	149(5.4)	157(6.0)	299(8.3)	301(8.9)
성착취물제작	63(2.3)	102(3.9)	93(2.6)	67(4.9)
아동복지법위반 ⁴⁾	125(4.5)	144(5.5)	209(5.8)	301(8.9)
계	2,753(100.0)	2,607(100.0)	3,622(100.0)	3,397(100.0)

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20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 분석결과

한편, 초·중·고등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는 2021년 기준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 충북 28건 순으로 나타나 서울과 충남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 그러나 학생 인구 10만 명당 초·중·고등학교

5) 아동복지법 위반: 언어 혹은 글을 통한 성희롱, 음란행위 강요, 음행매개, 성적 행위 및 성적 학대 등.

생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세종 17.9건, 충북 16.6건, 대전 14.4건, 충남 14.0건으로 나타나 세종과 충북지역에서 학생 수 대비 발생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 2022.10.12.). 그렇지만 암수율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상당함은 예상할 수 있다.

<표 2> 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지역	2020	2021	2021	
			학생수(초·중·고)	학생 10만명당 디지털성범죄
강원	30	15	149,569	10.0
경기	4	20	1,491,446	1.3
경남	31	50	371,952	13.4
경북	12	4	258,794	1.5
광주	5	10	173,725	5.8
대구	38	22	248,195	8.9
대전	12	23	160,248	14.4
부산	50	24	303,811	7.9
서울	33	89	827,765	10.8
세종	9	10	55,749	17.9
울산	11	5	130,606	3.8
인천	22	19	308,752	6.2
전남	18	9	186,014	4.8
전북	8	17	193,522	8.8
제주	2	0	80,159	0.0
충남	26	33	235,854	14.0
충북	17	28	168,578	16.6
합계	328	378	5,344,739	7.1

자료 출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 2022.1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년 10월 1일 기준 학생수 참고하여 재가공

Ⅲ.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

1. 조사개요

조사분석을 위해 2022년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연구보고서 「대구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의 raw data를 목적에 맞게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심의(IRB)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조사는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신뢰성과 연구윤리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조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설명문과 부모동의서 및 본인동의서를 전달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944명의 유효표본이 확보되었다. 이 조사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3.19%의 표본오차를 나타낸다.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학교급별 및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하였기에 여학생은 502명, 남학생은 442명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은 331명 중 여학생은 191명, 남학생은 140명이다. 그리고 중학생은 302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여학생은 156명, 남학생은 146명이다. 고등학생은 311명이고, 이 중 여학생은 155명, 남학생은 156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응답 수	비율	구 분		응답 수	비율	
전 체		944	100.0%	전 체		944	100.0%	
성별	여성	502	53.2%	지역	중구	92	9.7%	
	남성	442	46.8%		동구	126	13.3%	
학교급	초등학교	여성	1	지역	서구	109	11.5%	
		남성	91		20.2%	남구	87	9.2%
	중학교	여성	140		14.8%	북구	167	17.7%
		남성	156		16.5%	수성구	104	11.0%
	고등학교	여성	146		15.5%	달서구	148	15.7%
		남성	155		16.4%	달성군	111	11.8%
		156	16.5%					

2) 조사문항의 구성

조사문항은 2021년 이후부터 2022년 조사시점인 약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의 유무,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이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의 이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 인지 여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5.9%가 이수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은 70.9%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8.1%,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형별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86.7%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5.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76.1%로 나타났다.

<표 4>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내용	빈도(명)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811	85.9
	불이수	133	14.1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이수	669	70.9
	불이수	275	29.1
가해경험 ⁵⁾	가해경험 없음	868	91.9
	가해경험 있음	76	8.1
피해경험 ⁶⁾	피해경험 없음	719	76.2
	피해경험 있음	225	23.8
디지털 성범죄 처벌가능성	정확하게 모름	126	13.3
	알고 있음	818	86.7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심각하지 않음	46	4.9
	심각함	898	95.1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	모름	226	23.9
	알고 있음	718	76.1

5)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은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한 적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 성적 사진,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동의없이 타인의 몸 일부(다리, 가슴 등)를 촬영한 적 있다.', '음란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사람의

3) 디지털 성범죄 처벌가능성 인지

대구지역 아동·청소년 944명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처벌받는 범죄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86.7%에 불과하였고, 일부 유형은 처벌되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두 처벌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89.6%는 디지털 성범죄가 모두 처벌받는 범죄임을 알고 있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68.4%의 아동·청소년이 처벌받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디지털 성범죄 처벌가능성 인지

구분		모른다	안다	전체	Chi-Square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87 (10.4)	727 (89.6)	811 (100.0)	44.490*** (.000)
	받지 않았다	42 (31.6)	91 (68.4)	133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74 (11.1)	595 (88.9)	669 (100.0)	10.378** (.001)
	받지 않았다	52 (18.9)	223 (81.1)	275 (100.0)	
전체		126 (13.3)	818 (86.7)	944 (100.0)	

*: p<.05, **: p<.01, ***: p<.001

4)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95.1%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4.9%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얼굴을 합성한 적이 있다.',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채팅방 등에 공유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거나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등의 8가지 문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함.

- 6) 피해경험은 가해경험의 유형별로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함.
- 7)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저장, 전시, 소지 및 시청, 유포협박, SNS 등 미디어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희롱과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각성 인지가 높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구분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전체	Chi-Square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32 (3.9)	779 (96.1)	811 (100.0)	10.674** (.001)
	받지 않았다	14 (10.5)	119 (89.5)	133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25 (3.7)	644 (96.3)	669 (100.0)	6.393* (.011)
	받지 않았다	21 (7.6)	254 (92.4)	275 (100.0)	
성별	여성	12 (2.4)	490 (97.6)	502 (100.0)	14.254*** (.000)
	남성	34 (7.7)	408 (92.3)	44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1 (3.3)	320 (96.7)	331 (100.0)	12.208** (.002)
	중학교	9 (3.0)	293 (97.0)	302 (100.0)	
	고등학교	26 (8.4)	285 (91.6)	311 (100.0)	
전체		46 (4.9)	898 (95.1)	944 (100.0)	-

*: p<.05, **: p<.01, ***: p<.001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94.0%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는데 비해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4.2%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남학생은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유무에 따라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인지에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남학생은 94.1%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함을 인식 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지 않은 남학생은 88.1%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7> 예방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

구분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전체	Chi-Square	
여성 n=50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10 (2.2)	435 (97.8)	445 (100.0)	.345 (.557)
		받지 않았다	2 (3.5)	55 (96.5)	57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7 (1.9)	355 (98.1)	362 (100.0)	1.161 (.281)
		받지 않았다	5 (3.6)	135 (96.4)	140 (100.0)	
	전체		12 (2.4)	490 (97.6)	502 (100.0)	-
남성 n=44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22 (6.0)	344 (94.0)	366 (100.0)	8.475** (.004)
		받지 않았다	12 (15.8)	64 (84.2)	76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18 (5.9)	289 (94.1)	307 (100.0)	4.736* (.030)
		받지 않았다	16 (11.9)	119 (88.1)	135 (100.0)	
	전체		34 (7.7)	408 (92.3)	442 (100.0)	-

5)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 인지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23.9%는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77.6%는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66.9%만이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표 8>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 인지

구분		모른다	안다	전체	Chi-Square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182 (22.4)	629 (77.6)	811 (100.0)	7.106 (.008**)
	받지 않았다	44 (33.1)	89 (66.9)	133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137 (20.5)	532 (79.5)	669 (100.0)	15.119 (.000***)
	받지 않았다	89 (32.4)	186 (67.6)	275 (100.0)	
성별	여성	114 (22.7)	388 (77.3)	502 (100.0)	.893 (.345)
	남성	112 (25.3)	330 (74.7)	44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75 (22.7)	256 (77.3)	331 (100.0)	2.418 (.298)
	중학교	67 (22.2)	235 (77.8)	302 (100.0)	
	고등학교	84 (27.0)	227 (73.0)	311 (100.0)	
전체		226 (23.9)	718 (76.1)	944 (100.0)	

*: p<.05, **: p<.01, ***: p<.001

6)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과 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무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구분		피해 없음	피해 있음	전체	Chi-Square
심각성 인지	심각하지 않다	31 (67.4)	15 (32.6)	46 (100.0)	2.051 (.152)
	심각하다	688 (76.6)	210 (23.4)	898 (100.0)	
디지털성범죄 처벌 가능성 인지	처벌되는 범죄인지 정확히 모름	88 (69.8)	38 (30.2)	126 (100.0)	3.203 (.073)
	모두 처벌되는 범죄인지 알고 있음	631 (77.1)	187 (22.9)	818 (100.0)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619 (76.3)	192 (23.7)	811 (100.0)	.081 (.775)
	받지 않았다	100 (75.2)	33 (24.8)	133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509 (76.1)	160 (23.9)	669 (100.0)	.008 (.927)
	받지 않았다	210 (76.4)	65 (23.6)	275 (100.0)	
성별	여성	378 (75.3)	124 (24.7)	502 (100.0)	.443 (.505)
	남성	341 (77.1)	101 (22.9)	44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70 (81.6)	61 (18.4)	331 (100.0)	8.486* (.014)
	중학교	224 (74.2)	78 (25.8)	302 (100.0)	
	고등학교	225 (72.3)	86 (27.7)	311 (100.0)	
전체		719 (76.2)	225 (23.8)	944 (100.0)	

*: p<.05, **: p<.01, ***: p<.001

7)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와 가해실태

아동·청소년의 8.1%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각성 인식 및 처벌가능성 인식, 교육 유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유무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되는 범죄인지를 알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생 중 7.2%가 가해경험이 있었으나,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아동·청소년은 23.9%가 가해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처벌가능성과 관련하여서 디

디지털 성범죄가 유형별로 처벌되는 범죄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2%였으나 범죄인지를 정확히 모른 경우는 가해경험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지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실태

구분		가해 없음	가해 있음	전체	Chi-Square
심각성 인지	심각하지않다	35 (76.1)	11 (23.9)	46 (100.0)	16.436*** (.000)
	심각하다	833 (92.8)	65 (7.2)	898 (100.0)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처벌가능성 인지	처벌되는 범죄 인지 정확히 모름	109 (86.5)	17 (13.5)	126 (100.0)	5.816* (.016)
	모두 처벌되는 범죄인지 알고 있음	759 (92.8)	59 (7.2)	818 (100.0)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받았다	748 (92.2)	63 (7.8)	811 (100.0)	.621 (.431)
	받지 않았다	120 (90.2)	13 (9.8)	133 (100.0)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받았다	620 (92.7)	49 (7.3)	669 (100.0)	1.637 (.201)
	받지 않았다	248 (90.2)	27 (9.8)	275 (100.0)	
성별	여성	470 (93.6)	32 (6.4)	502 (100.0)	4.070* (.044)
	남성	398 (90.0)	44 (10.0)	44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311 (94.0)	20 (6.0)	331 (100.0)	2.808 (.246)
	중학교	275 (91.1)	27 (8.9)	302 (100.0)	
	고등학교	282 (90.7)	29 (9.3)	311 (100.0)	
전체		868 (91.9)	76 (8.1)	944 (100.0)	

*: p<.05, **: p<.01, ***: p<.001

8)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실태와의 관계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22.7%는 가해경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없는 학생은 96.5%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경험만 있는 경우는 77.3%,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는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가해와의 관련성

구분		가해유무		전체	Chi-Square
		가해 없음	가해 있음		
피해유무	피해 없음	694 (96.5)	25 (3.5)	719 (100.0)	85.248*** (.000)
	피해 있음	174 (77.3)	51 (22.7)	225 (100.0)	
	전체	868 (91.9)	76 (8.1)	944 (100.0)	

*: p<.05, **: p<.01, ***: p<.001

IV.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대구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약 95.1%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97.6%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92.3%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여학생의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디지털 성범죄 가해경험이 7.2%로 낮았고,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23.9%로 가해경험이 높았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방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94.0%로 나타났지만,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8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매체 활용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고 그 심각성의 정도도 높아질 것이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이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한 디지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발전 속도에 맞추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콘텐츠나 방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2022년부터 종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도입되어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디지털 도구 활용을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성취를 이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를 구분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코딩, 공유와 디지털 협업 등의 교육과 동시에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 불링,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댓글 커뮤니케이션, 건강한 정보검색과 소비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 보호 등을 습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짐과 더불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는 교육 대상자에게 맞추어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하며, 초·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사례가 적절히 구성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의 유무와 실제 가해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인식개선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희영,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12(2): 45-93.
- 고보혜·오현경, 2020. 광주지역 디지털 성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광역여성가족재단.
- 김경희 외, 201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공사.
- 김경희·김수아·김은경,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김미선·신현주, 2019,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 인천 여성가족재단.
- 김영주, 2021, 충남 아동·청소년 성매매·성폭력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김정연, 2021,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21-150.
- 김한균·김지선·윤정숙·윤지영·김대근·장다혜, 2020,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KIC ISSUE PAPER, 2020 특별호: 1-14.
- 김혜진, 2020,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8호: 85-95.
- 김홍미리, 2021,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김희정·박광민, 2020, “디지털 성범죄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2권 제4호: 237-276.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수현, 2018, “‘리벤지 포르노’ 및 디지털성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이화법리뷰, 8: 23-39.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2020 성범죄백서. 법무부.
- 서울시·나무인권상담소, 2019,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서울시.
-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유경희, 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근영·임지연,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다운·이은지, 2020,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 법률 및 인터넷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50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1호.

경찰청, 범죄통계(2018-2020) 자료(전국, 대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0.4.23.(목) 배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15.)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 권익 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3.24.)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아동 청소년성보호과.

e대한경제, 2022.6.1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130954487900979>

권정희, 2021. 10.22, 한국일보, 그 열차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85890>

김지애, 2021. 3.15, 국민일보, 디지털 성범죄 처벌·형량 높아졌지만 규정 한계·보상은 부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2610&code=11131100&cp=du>,

2021.7.30.일 검색.

네이버 국어사전, 그루밍,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 2022. 8. 30일 인용

노컷뉴스. 2020.9.25., ‘n번방 성착물 제작’안승진 징역20년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19461>

뉴시스, 2022.6.19.,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방통위. 차단앱 배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2022.2.7. 인용

스쿨ITV, 2022.3.22.,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367명 상담·삭제,

<http://www.schoolitv.com/article.php?aid=164790468276972073>, 2022.6.30.일 인용

이데일리, 2022.2.7., 사이버성폭력범 10명중 7명이 10·20대...“제2의 n번방 사태 막아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1926629114848&mediaCodeNo=257>

한겨레, 2021.7.15., 멈추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검거 449명 중 유통·판매가 31% 달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45.html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2021. 5.

31. 검색.

Recognition and Status of Digital Sexual Crimes in Children and Youth : Focusing on the survey of the Daegu province

Park Young Ju

[Abstract]

Recently,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our society has to solve is digital sex crime.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the people beca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after in the case of “Nth Room”, and they came to find countermeasures proactively. Since digital sex crimes occur through digital, teenagers who are familiar with digital devices are likely to be involved, and the damage i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which is easy to spread.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aegu. The results of the digital sex crime recognition and fact-finding survey of 944 students(who contained a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Daegu are as follows.

First, about 95.1%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In particular, 97.6% of female stud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and 92.3% of male stud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so the seriousness of female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between those who completed a course of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and those who did not. Those who completed a course of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s important.

Third, it was foun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committed less digital sex cri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 through various contests and campaigns so that students can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

Key Words: Digital Sexual Crimes, Online Grooming, Juvenile Sex Crimes, Victims of Sex Crimes, Nth Room case

접수일 (2023년 12월 6일), 심사일 (2023년 1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7일)

